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064 발의연월일: 2022. 4. 4.

발 의 자: 한준호·조승래·김정호

김용민 · 맹성규 · 이상헌

안규백 · 소병철 · 정일영

기동민 · 김병기 · 최종윤

황운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정기점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음.

그런데 육안이나 점검기구에 의존하는 현장점검 방식은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,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전 구간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철도 전 구간 탐지가 가능한 원격탐사 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점검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정기점검 실시 방법으로 센서 및 센서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원격탐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관

리를 디지털화하고, 철도시설 관리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9호 및 제2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 중 "점검기구"를 "점검기구, 센서 및 센서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"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철도시설에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철도시설에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- 1. 육안이나 점검기구를 사용하는 현장점검
- 2. 센서 및 센서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원격탐사
- 3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다	
만,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	
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철도산	
업발전 기본법」에서 정하는	
바에 따른다.	<u>.</u>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"정기점검"이란 철도시설의	9
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	
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	
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	-점검기구, 센서 및 센서를
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	통하여 수집한 데이터
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	
말한다.	
10. ~ 15. (생 략)	10. ~ 15.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정기점검의 실시 등) ①	제29조(정기점검의 실시 등) ① -
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	
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	
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	
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<u>철도</u>	<u>다음</u>
<u>시설에</u>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하여야 한다.	<u>방법으로 철도시설에</u>

	,
<u> <신 설></u>	1. 육안이나 점검기구를 사용하
	는 현장점검
<u><신 설></u>	2. 센서 및 센서를 통하여 수집
	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원
	<u>격탐사</u>
<u><신 설></u>	3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
	<u>정하는 방법</u>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